

1. 공중보건

| 단원 | 문항수 | 출제율 |
|---------------|-----|------|
| 1. 공중보건 총론 | 3 | 15% |
| 2. 역학과 보건통계 | 3 | 15% |
| 3. 질병관리 | 4 | 20% |
| 4. 환경보건 | 4 | 20% |
| 5. 산업보건 | 1 | 5% |
| 6. 식품위생과 보건영양 | 0 | 0 |
| 7. 인구보건과 모자보건 | 1 | 5% |
| 8. 학교보건과 보건교육 | 1 | 5% |
| 9. 노인`정신보건 | 1 | 5% |
| 10. 보건행정`사회보장 | 2 | 10% |
| 계 | 20 | 100% |

2022년 서울시 보건직, 의료기술직 공중보건학 문제는 그동안의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새롭거나 수험생이 전혀 모를만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을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중보건 역사의 경우 단순한 시기만 알아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역사적 사건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강의 중 특히 강조하며 연도를 언급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업을 충실히 듣고 강조한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였다면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대략적으로 공부했다면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경우 반드시 출제 가능하며 특히 “기본원칙”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측하여 강의 중 강조해드렸으며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대방고시학원의 수업을 수강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을 강조하였는데 역시 감염병 파트에서 여러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보건직,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시험은 평소 기본서를 베이스로 공부를 꼼꼼하고 깊이 있게 한 수험생에게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매우 높은 난이도로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험을 치러낸 수험생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 보건행정

| 단원 | 문항수 | 출제율 |
|-----------------|-----|------|
| 1.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 | 2 | 10% |
| 2. 보건의료 체계와 자원 | 3 | 15% |
| 3. 보건의료조직 | 1 | 5% |
| 4. 사회보장 | 5 | 25% |
| 5. 재무행정과 보건경제 | 0 | 0 |
| 6. 정책이론과 기획이론 | 0 | 0 |
| 7. 조직 및 인사행정 | 5 | 25% |
| 8. 보건사업 | 4 | 20% |
| 계 | 20 | 100% |

2022년 서울시 보건직 보건행정 문제는 중간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유형이나 기본서에 없는 내용의 문제가 없었으나 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A책형 4번문제는 출제오류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정답 2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로 출제되었으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교육사도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됨)

출제된 문제들은 모두 빈출되는 **이론으로 수업 중 강조된 내용 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수업 중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대한 이론이 강조되었고 이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SWOT분석의 문제는 강의 중 최신 기출경향 상 출제가능성이 높음을 수업 중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강의 중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베이스로 기본을 다진 수험생이라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험을 치러낸 수험생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 오류 문제]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②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④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정답 ②으로 출제되었으나 법 규정상 보건교육사도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됨.

관련근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